

6·2지방선거 달라지는 것들

병역·재산 자료 제출 안하면 등록 무효
출마 공무원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

개정 선거법 오늘 공포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당 8표를 기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병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1인8표제=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유권자들이 8번 기표해야 한다는 예이다.

선관위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고, 투표절차에서도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적어도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8표제 실시에 따른 투표용지 물량도 3억1천3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선관위는 예측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투표 개표 및 단속 등 선거관리인력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17.5% 증가한 57만4천75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장 광고출연 금지=내달 14일부터 정당지도, 당선자를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과 언론사, 조사위의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달 24일부터 병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금품수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방선거 공직사퇴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전까지 (단 예비후보 등록면 사퇴해야)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출마시 예비후보 등록면 직무정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전까지 사퇴 (3월 4일) 기초단체장 출마시 예비후보 등록면 직무정지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출마시 후보자 등록전까지 사퇴 광역의원 출마면 직무 유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출마시 직무유지 광역의원 출마시 후보자 등록전까지 사퇴 기초의원 출마시 직무유지

예비후보 등록시기

광역단체장·교육감	2월 2일부터
시·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의원	2월 19일부터
군 단위 기초단체장·군의원	3월 21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5월 13~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운동기간	5월 20일~6월 1일

이와 관련해 50배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작년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장 출마 의원, 해당지역 보선 참여 금지=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처리되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A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한 후보자는 당내경선, 시장선거에서 낙선해도 A지역구 보선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비용 초과지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는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처리되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유권자 알권리·생활보장권 강화 =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개장소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확대됐고, 전화를 이용한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투개표 합리화=지방의원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 소속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종전에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지했으나 이번에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투표 비밀보호 및 대표행위 방지를 위해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위반자에게 2

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후보예정자 사퇴시한=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은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찌든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어깨띠 착용 인원수 제한 ▲사회자 및 연설인 신고 규정 ▲선거사무소 당사의 간판·현수막 제한 ▲인터넷광고 사전신고제 등이 폐지됐다.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이 자신을 지지, 지원한다는 사실을 표명할 수 있고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할 때 사하지 않은 대중음악도 방송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난립방지=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5월13-14일) 때 해야 할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연합뉴스

선거용 출판기념회 위험수위

세 과시·줄 세우기 등 부작용 속출...선관위 조사 나서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가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피해 마치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하거나 세 과시에 줄 세우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섰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오는 3월4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등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다음달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출판기념회를 연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 을), 전갑길 광산구청장, 양형일 전 의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 수석 등이 있으며,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 주승용 의원 등이 있다.

또한, 광산구청장과 해남군수 출마 예정자인 김현규 전 북구 부구청장과 박상일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등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강은태 의원도 이달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중 3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무작위 초청장 발송과 초청장에 사인 게재, 출판기념회장 홍보물 부착 등으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세를 과시할

수 있는 데다 정치후원금까지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기념회가 세 불리기와 지역민 및 각종 단체 줄 세우기 등 선거 조거 과열 양상으로 변질하면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에서 서적의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영상 속하 메시지를 빙자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일부 출마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며, 앞으로 출판기념회에 대한 현장 감독과 지도 활동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출판기념회에서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낭패를 당하는 후보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아라온호 남극 도착

쇄빙선 아라온호를 타고 지난 23일 서남극 케이프 벅스에 도착한 남극대륙기지건설후보지정밀조사단이 24일 대륙에 상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조사단원들이 헬기로 부터 장비를 하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 입법예고 정치권 전운

친이 당론 변경 총력
친박·야당 강력반발

정부가 이번주 초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어서 여여 또는 여야 등 각 진영 간 대립이 더욱 노골화되는 등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 후 최소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며,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을 이르면 2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듣는 작업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여론몰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22일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 건설에 따른 지역 역할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26일 광주와 나주를 방문,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약속하는 등 정방위 행보를 이어간다. 이에 맞서 친박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

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도 친이계의 공세 수위에 따라 또 다시 전면전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대대적인 원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세종시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민국 장애인활동보조1등기관!!
노인요양보호1등기관!!

이동보조서비스, 목욕서비스, 민택서비스, 생활서비스, 사생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장애인목욕방견립 추진기관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자곡동 339-41-58 (북구2차) www.jabwv.or.kr
전화: 062-269-6390 팩스: 062-269-6390